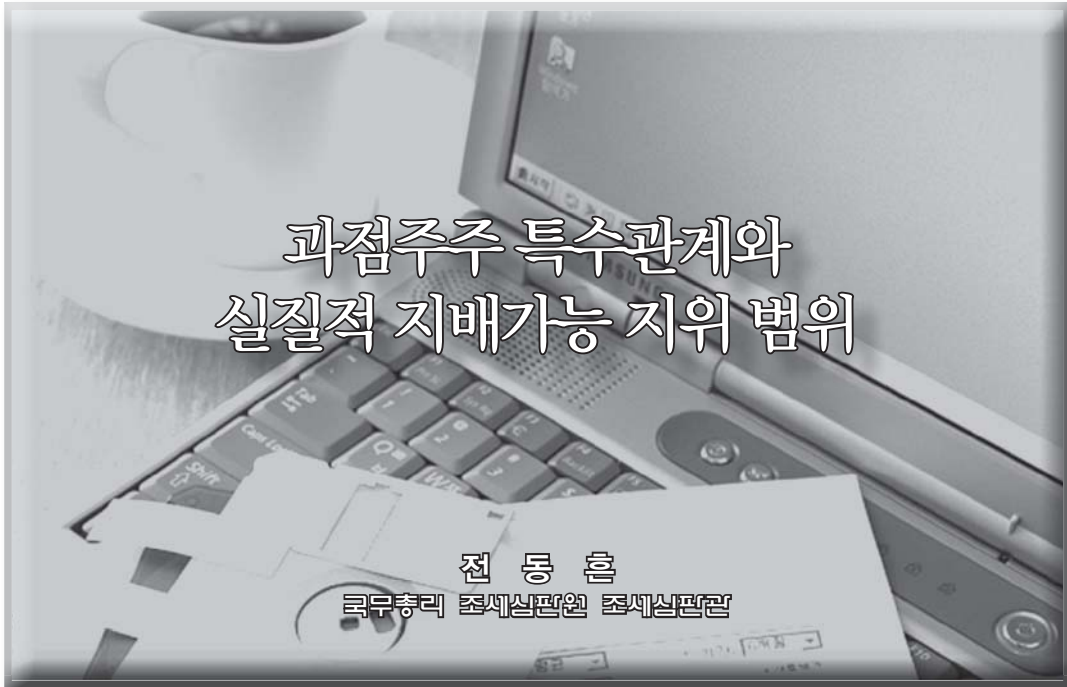




I. 의의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본래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의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도 부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국세와 함께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지방세 채무이행을 보충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는 만큼, 주된 납세의무자는 아닌 것이다. 또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보충적 납세의무의 범위는 과점주주의 경우 그 납세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 확장문제도 타인에게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부부별산제나 개개인별 납세의무 부담원칙에 따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헌적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97헌가13, 1998.5.28) 등에서도 무한정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취득세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의제납세의무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지방세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확대에 해당한다.

구 분	제2차납세의무	취득세납세의무
납세의무 성립	·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납세의무) 성립일 (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 명의개서일(주식취득일)
부담범위	·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므로 확정, 당해 법인의 체납지방세부담액(과점주주 지분비율 범위 내)	· 신고납부의무 직접이행 당해 법인이 보유자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범위 내
한 도 액	· (법인재산총액 - 해당부채) × $\frac{\text{과점주주의 주식(출자)액}}{\text{법인주식(출자)총액}}$	· 과점주주당시의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납 세 자	·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2. 최근 과점주주와 관련 제기되는 쟁점

첫째,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주일방이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면 여타의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특수관계를 판단하면서 쌍방간의 특수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 다음 쌍방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인세법상의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대판 2008두150, 2011. 7. 21)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일방관계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방관계 견해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쌍방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과점주주의 판단요건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처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도 추상적이어서 개별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II. 과점주주의 요건

취득세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때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된 자들을 말한다.

- ① 「비상장법인」의 사실상의 주주·사원일 것(의결권이 있는 주주)
-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 ③ 보유주식비율이 50% 초과될 것
- ④ 집단성(Group형태)
-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여기서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납세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야 하는데, 비상장법인이라 함은 「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한다. 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한 법인의 경우라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법인으로 볼 수 없다. 상장 중인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통보받은 「상장일자」 이후부터 상장법인이 된다.

대상법인	판 단	비 고
상장법인	X	장외등록
코스닥상장법인	O	
제3시장등록 · 비상장법인	O	

〔사 례〕 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외의 시장을 말하고, 제2항에서 「코스닥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비상장법인의 범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행안부 지방세운영-231, 2008.7.15.)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

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78누333(1979.12.26))

|| 판례 || 과점주주의 이중과세와 위헌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조심2010지0691, 2011.09.29)

[사례] 과점주주의 판단

회사정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종결되면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함(행자부 2006-1062 (2006. 11. 27))

III. 과점주주 특수관계의 일방성에서 쌍방성

과점주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주주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는바, 이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간의 특수관계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전부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정○○과 (주)H 백화점 및 (주)H H&S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주)H 백화점과 (주)H H&S의 임직원들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과점주주의 범위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바 이 부분은 기존의 과점주주 특수관계 판단 운영기준을 부정한 결정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판 2008두150, 2011. 7. 21)에서는 일방관계설에 의거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제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쌍방성 관계가 타당한지 아니면 일방성 관계로 서만으로 족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이 문제는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만큼 2인의 주주간의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주주 1인과 여타 주주와의 관계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면 반대로 여타 주주의 입방에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3인의 주주에 있어서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1인 주주와 여타의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로서 충족하는 것이나 여타 주주 2인간에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3인 주주간에는 1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다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지방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3인 모두 쌍방간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에 불명확하다. 이 규정은 2인 주주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타당하지만 3인 주주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명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

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 乙·丙개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乙·丙개인·A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 대상법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A법인에 있어 乙·丙개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입장에서는 乙·丙개인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법인의 임원인 乙·丙개인의 입장에서는 A법인을 乙·丙개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과-5116, 2010.10.27.)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 판단

甲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甲개인과 A·C법인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대법원 06두19501, 2008.10.23.) 甲개인이 A·C법인의 회장 및 임원으로 甲개인·A·C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두15350, 2009.12.24. 등 참조) 대상법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甲개인은 A·C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A·C법인의 입장에서는 甲개인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C법인의 임원인 甲개인의 입장에서는 A·C법인을 甲개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조심 2008지345, 2008.12.11. 참조) 甲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甲개인과 A·C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甲개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甲개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C법인들과의 관계를 사용인 기타고용 관계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대상

법인 주주입장에서 볼 때에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 사이에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과-2937, 2010.7.12.)

[과점주주의 특수관계판단기준]

- ① 甲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甲개인과 A·C법인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대법원 06두19501, 2008.10.23.) 甲개인이 A·C법인의 회장 및 임원으로 甲개인·A·C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두15350, 2009.12.24. 등 참조) 대상법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甲개인은 A·C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A·C법인의 입장에서는 甲개인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C법인의 임원인 甲개인의 입장에서 A·C법인을 甲개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조심2008지345, 2008.12.11. 참조) 甲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甲개인과 A·C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
- ② 甲개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甲개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C법인들과의 관계를 사용인 기타고용 관계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대상법인 주주입장에서 볼 때에도 친족 기타 특수관계 사이에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음.

주주명	甲 취득 전		甲 취득 후		甲과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법인	1,240,000	40%	1,240,000	40%	甲개인은 A법인의 회장으로 근무
B법인	775,000	25%	527,000	17%	관계없음.
C법인	310,000	10%	310,000	10%	甲개인은 C법인의登記임원
D법인	155,000	5%	155,000	5%	甲개인은 직계비속(戊)과 함께 D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
개인주주 3인 (乙, 丙, 丁)	620,000	20%	620,000	20%	개인주주3인은 甲개인의 직계비속
甲개인	0	0	248,000	8%	

【지정】 과점주주에 대한 특수관계 적용요령(행안부 지방세운영과-1823, 2010.5.3.)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출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점주주의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기 통보(지방세정팀-3632, 2007.9.6.)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변경 통보(대법원 판결 2007두10297, 2007.8.23.)

여기서 과세표준에 열거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사례】 혼인에 의한 특수관계성립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개인 甲과 개인 乙은 부자관계로서 이들이 출자한 주식의 합계가 50%이고, 개인 丙과 개인 丁은 형제자매로서 이들이 출자한 주식의 합계가 50%인 경우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개인 甲과 개인 丙의 혼인으로 (개인 甲-개인 乙

—개인 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되면서 이들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50%를 초과(90%)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행안부 지방세운영—598, 2009.2.9.)

【 사례 】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

1. 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은 (주)H백화점과 (주)H H&S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두개 법인의 입장에서 정○○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의 임원인 정○○의 입장에서 두개법인을 정○○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정○○으로 기준으로 하면 (주)H백화점과 (주)H H&S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 법인과 나아가 이들 법인의 다른 임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정○○과 (주)H 백화점 및 (주)H H&S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주)H 백화점과 (주)H H&S의 임직원들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과점주주의 범위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08지0346, 2008.11.12.)

—쟁점사항은 (1) 청구인 중 (주)H 백화점과 (주)H H&S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두개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자와 다른 임직원들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들의 소유주식수를 합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임.

|| 판례 || 과점주주의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시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9.8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정○○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상속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99.82%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2007두6588, 2008.2.29.) —상속지분으로 지분전체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함.

|| 판례 ||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일방관계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뿐만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대판 2008두150, 2011. 7. 21)

IV. 실질적 지배할수있는 지위 판단기준

1. 과점주주의 형식요건과 실질요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같은 뜻),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

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경영지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보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이며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판단하며 취득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경영참여나 지배목적이 아니고 상장 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취득의 강제성 여부로서 법원이나 관계법령의 이행 및 정부의 매입지시에 의한 취득의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주식의 취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주식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관계법령이나 정부시책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라고 보기 곤란한 것이다.

셋째, 경영권 행사시 정부지시나 타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경영권의 행사나 의사결정은 주로 법원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거 행사되는 것이며, 이는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주식의 처분이나 관리는 법원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임을 받아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수탁자로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주식발행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 주식의 보유방법, 매각처분 등도 법원이나 정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주식발행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넷째, 사실상의 주주 중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은 이를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배당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경우에는 비록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주

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우선주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실질적 지배력의 필요조건성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바, 여기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보아서는 전혀 당해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 본문 단서의 규정에서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는 것이다(대법원 92누11138, 1994.5.24. 참조).

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배당 우선주 등)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과점주주의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판례 ||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범위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대법원 92누11138, 1994.5.24. 참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4누6222, 1994.8.12.; 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대법원 2006두19501, 2008.10.23.)

|| 판례 ||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구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위 개정 전의 구법하에서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8두12062, 1998.12.8.; 대법원 97누5930, 1998.10.13.)

|| 판례 ||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단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5누14770, 1996.12.6.)

|| 판례 || 사실상의 과점주주 의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을 것이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임.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200,000주의 주금을 동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를 경영관리하던 소외 은행에게 위 주식을 신탁양도함으로써 동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 은행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그 주식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소외 회사를 직접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대법원 82누136, 1983.2.22.)

|| 판례 || 과점주주의 사실상 지배력 범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 판례 || 명의신탁된 과점주주의 입증방법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대판 2011두12467, 2011. 9. 29)

V. 과점주주의 비과세 감면 적용 범위

1. 개요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비과세·감면할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 비과세·감면의 판단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검토대상이다.

① 견해는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예 : 조특법 § 120 ⑥)하여야 비과세·감면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감면되는 물건(예 :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만 비과세·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감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시 감면 등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② 견해는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시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비과세·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① 견해(과점주주 기준)와 ② 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① 견해(과점주주 기준)는 납세의무성립은 과점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감면대상 여부도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요건 판단 등이 명확하여 논리

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간주취득의 의미를 형해화할 소지가 있는 데 비하여, ② 견해(주식발행법인 기준)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등에 간주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해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과점주주에게도 비과세, 감면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것 인가?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주식발행법인과는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격체로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다른 이상 각각의 비과세 감면 요건을 두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 ||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그러한 법리는 2005. 12. 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단서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기부채납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과점주주로 된 자가 그 기부채납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여전히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인 점, ②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부채납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국가 등과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간주취득에 있어서는 기부채납 등의 효과를 그대로 받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기부채납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그 간주취득 역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두20816, 2011. 1. 27)

-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대물적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물적인 비과세의 경우에는 취득의 주체가 과점주주로 간주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사례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대상 판단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초과」로 개정되었으며,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2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07.12.31. 이전에는 甲법인은 乙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13%를 보유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乙법인은 '08.4월 자기자본 확충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甲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식 277,23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주균등 유상증자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는 “주식의 취득 행위”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 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시점에 甲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乙법인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191, 2011. 1. 12)

【 사례 】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 판단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만 설립과 해산, 정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사항들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조합에 대해 「민법」은 그 재산을 합유물로 하여 처분·변경을 제한할 뿐 만 아니라 각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도 처분, 분할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에게 타 조합원의 변제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3312, 2011. 7. 12)

2. 비과세 감면 대상과의 관계

과점주주의 취득은 발행법인 주식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의제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취득의 주체는 주식발행법인이지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첫째,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취득물건이 취득세면세점(과표가 50만원) 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 :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713, 1994.9.28. 참조).

둘째,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주식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2. 24. 참조), 산업단지에 최초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내무부 세정 13407-691, 1997.6. 28. 참조) ☺